

김 용 사무처장 초청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배경과 향후 시책방향」에 대한 조찬간담회 개최

본 협회는 지난 8월 26일(수) 대한상공회의소 12층 상의클럽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 용(金勇)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본 협회 회원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배경과 향후 시책방향」에 관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서 김 용 사무처장은 올 상반기에 실시한 공정위의 5대 기업집단에 대한 1·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배경과 내부거래의 규모 및 기업집단별 내부거래의 내용 및 주요 특징 등 동 조사 결과와 부당내부거래조사에 대한 공정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동 간담회에서 김 용 사무처장의 주요 발표 및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발표내용

동 간담회에서는 김 용 사무처장은 이번 내부거래는 기업집단소속 계열기업과 독립기업(비계열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서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려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며, 둘째로 우량기업이 적자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나타나는 주력사업부문의 핵심역량을 약화시키고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의 퇴출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주력부문에 모든 재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당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국가 전체로 볼 때도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데 있으며, 세 번째로 그 동안 재벌들의 선단식경영의 수단이 되어왔던 내부거래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1·2차 조



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업체는 1차 조사에서는 주로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18개사를 조사하였고, 1차 조사과정에서 관련기업이 추가로 포함됨에 따라 2차 조사에서는 지원업체 80개사, 수혜업체 35개사로 확대되었으며,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① 부도직전의 기업어음(CP) 고가인수, ②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CP 고가매입, ③ 후순위사채 고가매입 및 증권예탁금 명목의 저리대여, ④ 부동산 매각대금, 공사대금 장기간 회수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내부거래의 주요 특징을 보면 첫째, 기업집단의 주력기업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사를 집중 지원하였고, 지원받은 회사 총 35개사 중 25개사(71.4%)가 최근 3년중 1년이상 적자인 기업이며 자본잠식상태에 이른 기업이 9개사에 달하였으며, 적자기업이 계열사 지원에 동원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둘째, IMF사태 이후 경영이 악화된 계열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기준」 충족을 위해 계열회사들이 후순위사채 고가매입, 주식예탁금 저리예치, 유상증자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였고, 셋째로, 계열사에서 분리된 동일인의 친인척회사에 대하여 다수의 계열사들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원행위는 지원주체인 우량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여 그룹내 핵심역량을 약화시키고, 지원을 받는 한계기업의 퇴출을 자연시킴으로써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을 초래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법위반업체들로 하여금 당해 행위를 중지할 것과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였다. 또한 현행법 및 지침에 의하면 과징금을 매출액의 2%를 최고한도로 하여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범인세법상 과징금은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의 7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였는데, 자금·자산을 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는 금번이 법 시행 이후 처음이라는 점과 IMF 사태에 따른 자금난 등 업계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수준을 하향 조정하였다.

5대 기업집단에 대한 2차조사 결과도 금명간 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부당내부거래 행위는 조속히 근절시킨다는 방침하에 9월중 6대이하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조사도着手할 계획이다. 동 조사에서는 우량계열사의 한계계열사에 대한 자금·자산·인력지원과 금융사를 매개로 한 계열사간 자금지원, 후순위사채 고가매입 등의 방법으

로 경영이 악화된 계열금융회사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금번 부당내부거래 조사과정에서 느낀 것은 기업들이 아직도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계열사가 어려울 때 서로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대기업집단 전체, 나아가서 국가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음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만일 부당내부거래를 통하여 경쟁력 없는 부실 또는 한계기업을 우량계열사들이 계속 지원할 경우 부실기업을 지원한 우량계열사들조차 함께 부실해지는 동반 부실화가 초래되고 기업집단은 물론 국가경제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하향 평준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 용 사무처장은 우량기업들은 자금여력을 자본확충에 사용함으로써 부채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하며, 금번 조사를 계기로 기업집단들은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과감히 근절하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상황과 IMF 관리체제를 초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질의 & 응답

질문1 지원유형 중 부도 직전의 기업어음 고가매입과 관련하여 A라는 계열사가 당시 시중금리인 20%에 조달하여 비계열사인 B사에 20%로 대여를 해 주었다면 부당내부거래인가? 또한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한다면 과징금은 어떻게 부과되는가?

답변 지침에 의하면 부도직전 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적정한 이자율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시중실세금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당좌차월금리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당좌차월금리는 거의 30%를 넘는 경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회사채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격차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가격은 시장실세금리로 하되 만약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당좌차월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만약 당좌차월금리가 30%라면 매출액의 2%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10%에 해당하는 차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질문2 9월부터 6대 이하 기업집단에 대한 조사를 한다면 조사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97년 4월 1일 이후 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조사일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산정한다.

질문3 1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공사대금 자체를 받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앞으로 계속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다음 이행 점검이라든지 또 다른 조사시에 결국은 같은 시정조치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 시정조치를 받았을 때 해당업체는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부도를 내야 되는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가?

답변 공사대금을 무조건 면제시킨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골프장을 건설하는 업계에서는 회원권이 분양된 후 자금이 들어오면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통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여 이번 1차 조사에서는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대금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에서 충분히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방치해서 결과적으로 당해업체에 도움이 되었다면 제재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그 상태가 계속된다면 향후 시정조치 불이행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질문4 6대 이하 기업집단에 대한 조사방침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조사대상이 되는 기업이 전계열사인지 아니면 퇴출기업을 제외한다든지 하는 일부 선별적인 기준이 있는가?

답변 이중처벌이라는 가혹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퇴출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였다면 일단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으며 일단 조사를 하게 된다. 다만 과징금 부과측면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할 것인지는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또한 계열사간 지원을 목표로 하는 거래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퇴출시켜야 겠다든지, 그 회사가 퇴출기업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서 조사대상 회사를 선정하지는 않는다. 지원하는 자체가 부당한지, 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는지를 목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퇴출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질문5 내년도에 계열사간 유사업종끼리의 합병을 전제로 하여 금년에 구조개편을 하여 통합운영을 한다면 이것이 부당한 인력지원 행위에 해당되는가?

답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부당한 인력지원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이런 경우 수혜업체의 경쟁력을 높여 그 분야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질문6 조사대상 기간동안은 계열사였는데 현 시점에서는 계열사가 아니라면 조사대상에 포함되는가?

답변 법의 논리에서 보면 행위 당시를 문제삼기 때문에 일단 법의 조사대상으로 보게 된다.

질문7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있어서 조사의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

문에 실제적으로 임의조사의 성격으로 봐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보면 과연 어느 정도 깊이있는 자료까지 공정위가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분명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내부적으로 기준은 있는가?

답변 공정위는 검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영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피조사인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공정거래법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경우에는 영치를 할 수 있게까지는 되어 있다. 그러나 고의적인 조사방해나 자료 은닉은 형별로 처벌한 사례가 많이 있다. 이러한 조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조사에도 담합이나 부당내부거래같은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수색권의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질문8 또한 실질적인 조사과정에서 조사관들이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조서에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심사관의 심사보고서가 피심인들에게 송달된 지 3~4일 후에 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심인들에게 법적인 조력을 받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절차진행 자체가 공정위의 권한에 속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심인들의 방어권 등에 있어서는 막대한 침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절차적인 위법성이 법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답변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서에 날인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잘못

된 것이며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충분히 납득한 상태에서 전술을 받도록 내부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일주일 이내에 심사보고서가 전달되어 심판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즉석 심판을 개최하기도 하는데, 되도록이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질문9 국가경쟁력과 관련해서 부당지원행위의 적용대상으로 볼 때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도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내의 많은 외국기업들을 보면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방대한 계열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런 회사들 중 국내에 계열기업이 수개가 진출한 기업도 있고, 많은 계열기업 중 일부가 국내에 진출한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이와 비슷한 유형의 내부거래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정위에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내부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조사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국내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지 않는지에 대한 고려나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법 제23조에 있는 부당내부거래 조항은 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든 아니든 또 외국기업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진출한 기업이라면 모두 법적용 대상이 된다. 만약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계열회사가 모그룹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아 문제를 일으킨다면 당연히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처벌할 예정이다.